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가단116214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장민후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태환

피 고 1. 주식회사 E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형

변 론 종 결 2023. 4. 25.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172,7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2018. 2.경 피고 회사로부터 양주시 G 공장부지 축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9. 1. 11.경 완성하였는데, 성토부 및 절토부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 172,797,000원이 미지급되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B는 2018. 9. 7.경부터 2019. 1. 23.경까지 피고 회사에 21,800,839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원고 C은 1,800만 원 상당의 중장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원고 D은 피고 회사의 현장감독관 내지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약정된 보수 10억 원 중 일부로 1억 원(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실질 사주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2018. 2. 24. H과 원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달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한 적이 없고, 원고들과 사이에 공사 내지 물품 공급 등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그 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계약서(갑 제3호증)에 ‘도급인 H, 수급인 원고 회사, 감독관 원고 D’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는 등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실질적인 사주 원고 F와 H이 동업을 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일부 대금을 송금한 내역을 그 근거로 구장하나, 그것만으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청구권, 거래명세표, 자금집행요청서 등은 원고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거나 피고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근거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 D은 피고 F에 대한 보수금 청구와 관련하여 제출된 녹취록(갑 제29호증)에 원고 D이 피고 F에게 10억 원 보수 중 일부라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 F이 이를 승인하거나 보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은 확인되지 않아 위 주장사실의 증거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어 원고 D의 피고 F에 대한 보수금 지급 청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섭